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좌측 신장암

성별 나이 직종

직업관련성

남성 51세

스포트 용접 및 지게차 운전원

높음

1. 개요

근로자 ○○○은 1989년 4월 6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포트용접,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를 하던 중, 2016년 9월 경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요로 결석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 권유로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여 2016년 9월 12일에 좌측신장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다. 근로자는 상기질환이 스폿용접에서 발생한 용접흄, 지게차 운전과정에서 발생한 황산, LPG 지게차 운전업무시 발생하는 디젤매 연, 운전업무 중 바닥과 차체가 마찰하여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가루, 아스콘, 시멘트 가루, 페인트가루에 노출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화경

1989년 4월 6일 ㅁ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년까지 8년간 용접반 및 부품반에 소속되어 있었고 중간에, 타 조직으로 이동을 하였으나, 업무는 스포트 용접으로 동일하였다. 근로자는 용접작업 시 주간 10시간, 야간 10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 1997년 9월부터는 지게차 운전반에서 가스엔진 지게차 운전업무를 시작하여 2000년 10월까지 3연조 근무를 하였다. 200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야 10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2002년부터는 전동지게차로 변경하여 작업을 했다. 2013년 3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지게차 운전업무가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의 근무형태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4월부터 신장암 발병이 있던 2016년 9월까지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의 근무형태로 전동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였다. 지게차 운전업무 수행을 하는 기간 중 2년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하였으므로 유해인자의 노출기간에서 제외할 경우근로자는 질환이 발병하기 전까지 16년 9개월간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기타암 49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6년 9월 경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신장암 의심소견을 들었다. 상기 소견으로 타 병원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받았고 2016년 9월 12일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아 암 제거수술을 하였다. 이후 주기적으로 상기 질환에 대해 추적관찰하고 있다. 근로자는 15-3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주1회 1회소주 1병의 음주력이 있으나 음주는 2016년부터 금주상태이다. 개인 과거력으로는 고혈압이 있으며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식도암을 진단받았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16년 9월 좌측 신장암을 진단받고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 근로자는 1989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8년간 스포트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16년 9개월간 LPG차 또는 전동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장암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흡연, X~선, 감마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이,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는 용접흄, 비소 및 무기비소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화합물, PFOA, 인쇄공정 등이 알려져있다.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업무 중 노출된 황산은 신장암 발병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디젤엔진 배출물, 아스팔트 가루, 시멘트 가루, 페인트 가루의 노출 수준 역시 높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장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부족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8년 동안의 스포트용접 과정에서 상당량의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이는 신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다. 끝